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저소득층 전세금 용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현재 지원되는 전세금 용자금액이 부동산 시장 현실에 맞지 않아 지원대상자가 입주 대상지를 선정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소득층 전세금 용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액 상향조정(안 제16조제1항)

- 당초 : 지원금액 1세대당 6천만원 이하
- 변경 : 지원금액 1세대당 1억원 이하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6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지원금액 등) ① 지원금은 1세대당 <u>6천만원</u> 이하로 한다. ② ~ ⑤ (생 략)	제16조(지원금액 등) ① ----- ----- <u>1억원</u> -----. ② ~ ⑤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주택법」

제84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 부담금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저소득층 전세자금지원 융자금을 부동산 실정에 맞게 6천만원이하에서 1억원이하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세출발생(조례 제16조제1항)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저소득층 전세자금지원 융자금을 1세대당 1억원으로 10세대 지원할 수 있도록 추계한다.

나. 추계시기는 2025년부터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전세금반환금	114,000	215,000	384,000	840,000	1,000,000	2,553,000
	○ 전세금이자	15,530	24,390	32,240	38,400	40,000	150,560
	소계(a)	129,530	239,390	416,240	878,400	1,040,000	2,703,560
세출	○ 전세금지급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소계(b)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 총 비용(a-b)		870,470	760,610	583,760	121,600	-40,000	2,296,440

4. 재원조달 방안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40억원으로 재원조달

5. 부대의견

본 추계결과는 저소득층 전세금 용자 지원사업 선정자가 증·감 될 경우 재정 소요액도 달라질 수 있으며, 전세금 지원후 4년후에 전세금이 반환됨으로 4년 주기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만 있으면 지원사업을 지속 가능함.

6. 작성자 : 주택과 주거지원팀 차현선(054-480-287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저소득층 전세자금지원 용자금 인상에 따른 소요비용

본 개정안은 2025년도 예산 1,000,000,000원(100,000,000원 × 10세대)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가. 전세자금지원용자금 산출내역

- 100,000,000원 × 10세대 = 1,000,000,000원

소 관 부 서		주 택 과
입 안 자	과 장	배 기 철
	팀 장	박 호 덕
	담 당 자	차 현 선 (480-2873)